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157-200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전화:02-2657-5000/전송:02-2657-5005/e-mail:adakom@naver.com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 국장:하재규 대리:박정호 담당:서정민

문서번호 대한의 제 1395 호

시행일자 2016. 6. 15. (년)

경 유

수 신 서울시한의사회장 직무대
행 및 15개 시도지부장

참 조 사무국(처)장

선 결			지 시	회 장
접	일자	2016. 6. 15	결 재	
	시간	4 : 56		
수 번호			부 회 장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사무국장	

제 목 「의료광고(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관련 의료법 준수사항 안내

1.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허위·거짓의 치료경험담을 작성·게시한 사건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및 의료기관 장에게 징역 및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또한 의료인이 제3자 또는 환자에게 치료경험담(사례) 게재를 사주하는 경우도 거짓광고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회로 각별한 주의·당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본회는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사항을 귀 지부에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들이 상기와 같은 사례로 처벌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치료경험담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 조항 위반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의사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6.13~, 붙임참고)

3.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요청 드리오니 회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널리 전파하시어 위와 같은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엄격히 금지

-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직접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를 사주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

- 아울러 치료받지 않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

붙임 1. 관련 기사.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주무관

이지연

행정사무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 전결 2016. 6. 15.

과장

이형훈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45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36 / skiolla@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6억 톨돈’ 못 믿을 포털 성형수술 카페 후기 운영자에 징역형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쓴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이자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이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송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서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외과 원장 A(42)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씨와 송씨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2억 2700여만 원을 건넸다. 이씨와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카페에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한다’는 내용의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달았다.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올리기도 했으며 다른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기도 했다.

조 판사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